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

1.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 제정 경과

■ 2018. 7. 17.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 의결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종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평적 회의체에 의한 사법행정을 실시할 필요성을 건의함
- 2018. 7. 17. 건의문 중 일부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8. 12. 12.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내용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 2019. 7. 5.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행정 개선 계획 발표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과 별개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내용대로 대법원규칙 제정으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독점적·폐쇄적 사법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발표

■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안)」 입법예고

-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그에 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함

■ 2019. 8. 12. 대법관회의 상정 및 의결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대법관회의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안)」을 상정하였고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

■ 2019. 8. 19.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 공포·시행

2.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의 주요 내용

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기능

▣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자문

- 대법원규칙상의 기구로서 자문기능을 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문기구로 설치. 그러나 대법원장은 2019. 7. 5.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뜻을 밝힘

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인적 구성

▣ 위원: 대법원장(의장) 포함 10명

▣ 구성: 대법원장, 법관 위원 5명, 非법관 위원 4명

- 의장: 대법원장(당연직)
- 법관 위원: 5명(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 非법관 위원: 4명

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소집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위원 1/3 이상이 요청한 경우

▣ 회의 안건과 의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 필요시 표결도 실시

라.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사항

▣ 아래의 사항 중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대법원장 입법의견(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구체적 인사안 수립에 관하여는 비법관 위원 미참여)
- 그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및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일반 분과위원회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각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필요시 비법관 위원 포함 가능)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회부한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필요적 설치
- 법관 5인으로 구성
 - 대법원장 지명 1인,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각 4인씩 추천받아 그 중 2명씩 임명

3.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경과 및 위원 구성

가. 출범 경과

▣ 2019. 8. 19.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 공포·시행

▣ 2019. 8.말 위원 추천 의뢰

- 법관 위원: 전국법원장회의(2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3인)에 각 추천 의뢰
- 비법관 위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 추천 의뢰

▣ 2019. 8.말 ~ 9.초 추천 결과 회신

-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3개 외부 단체에서 각 추천 결과 회신

▣ 2019. 9.초 대법원장의 비법관 위원 1인 추가 지명

- 학식과 덕망, 사법행정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지명

▣ 2019. 9. 9.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에 관한 안내말씀」 게시

▣ 2019. 9. 17.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임명 및 위촉 관련 인사발령

▣ 2019. 9. 26.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나. 위원 구성(대법원장 제외 9인)

성명	출생년도	현 직책	주요 경력 등	비고
윤준	1961	수원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이광만	196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김진석	196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
최한돈	196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부의장	
오승이	1979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1960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대법원장 지명
이찬희	196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총괄조정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각 단체 추천
박균성	1957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195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